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22다242250 부당이득금  
원고, 상고인 국가철도공단  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 
담당변호사 최현우  
피고, 피상고인 구미시  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지  
담당변호사 김판묵  
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2. 5. 11. 선고 2021나23538 판결  
판 결 선 고 2022. 11. 10.

주 문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1. 상고이유 제1·2점에 대하여

## 가. 관련 법리

1)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,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(제19조 제1항),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 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'국가철도공단'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·권한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(제19조 제2항), '국가철도공단'이 위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 범위 안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(제19조 제3항). 한편,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는 철도산업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'국가철도공단'이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'국가가 추진하는 철도 시설 건설사업의 집행(제1호)' 및 '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 업무의 집행(제2호)' 등을 명시하였고,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는 '국가철도공단'의 사업 범위에 '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(제1호)'와 '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, 공급 및 관리(제9호)' 등을 명시하였다.

2) 이러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·국가철도공단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·내용에 국가철도공단의 설립 목적 및 대행 업무의 내용·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,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관리청의 지위에서,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 업무와 함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, 이와 별도로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등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·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그 사업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있다.

## 나. 판단

1)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, ①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'국토계획법'이라 한다) 제65조에 따라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'종래의 공공시설'에 해당하는 사실,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으로 2,532,087,490원을 지급한 사실, ③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은 '대한민국'으로 표시하였지만, 원고가 업무대행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.

2)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관리청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의 집행 및 관리 업무는 물론 그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의 취득·관리 업무까지 담당한 것으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물론 그 매매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른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권한도 함께 보유·행사할 수 있다.

3)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,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'행정청'의 의미와 권리행사의 범위,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3항 및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.

## 2. 결론

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,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

다시 심리·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 대법관      민유숙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 조재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 이동원

주    심      대법관      천대엽